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18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제221471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안 제83조제11호)	3

I. 김주영의원 대표발의(제221471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주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28.

다. 회 부 일 : 2025. 12.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83조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

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가. 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
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안 제83조제11호)

현행	개정안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 ----- ----- -----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록말소를

현행	개정안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 ----- ----- -----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83조¹⁾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삭제 <2016. 2. 3.>
-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자²⁾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³⁾을 한 경우, 등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등록기준⁵⁾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83조 각 호 중 제11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를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⁶⁾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한 경우’를 국토교통부장관의 등록말소 사유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는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번호 제14720호)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720호) 제159조⁷⁾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근
3년간 안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⁸⁾가 다시 안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720호,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025.11.28.

현행	개정안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u>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9조(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① ----- ----- <u>경우에는</u> ----- ----- ----- ----- ----- ----- ----- ----- -----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고가 발생한 경우</u>	1. ----- ----- ----- ----- <u>산업재해를 발생시킨</u> -----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u>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u>	2. ----- ----- <u>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u> -----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 <u>등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u> ----- -----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정이 입법화되면, 현행법 제83조제11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나, 중대재해의 반복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⁹⁾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2025.9.15.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 시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1.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①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등 추진

-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 말소 요청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 **노동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토록 명확화*(건설산업기본법)

* 등록말소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

※자료: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9.15. p.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등록말소 요청 및 처분 체계 】**

구분	현행	개정안
「산업 안전 보건법」 제159조	-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 요청 가능 <신 설>	- 영업정지 또는 그 밖의 제재 요청 가능 - 3년간 2회 영업정지 처분 +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 해당 사업의 등록말소 또는 취소 요청 가능
↓		
「건설 산업 기본법」 제83조	<신 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한 경우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가능

한편,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참고사항으로 동 개정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을 기재하고 있음.

이 중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¹⁰⁾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¹¹⁾ 「소방시설공

1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719호,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025.11.28.

현행	개정안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공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722호,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025.11.28.

현행	개정안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공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다른 ----- -----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¹²⁾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¹³⁾은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723호,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025.11.28.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6.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 ----- ----- ----- ----- ----- 1. ~ 26. (현행과 같음) 2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4721호,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025.11.28.

현행	개정안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6.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 ----- ----- ----- ----- ----- 1. ~ 26. (현행과 같음) 2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의안번호 제14720호) 의결 시 다른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 사고 중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¹⁴⁾과 위험요인이 많은 건설공사 현장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등록말소를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11.25.

□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전년 동기 443명(411건) 대비 14명(3.2%) 증가
○ (업종별) ▲**건설업 210명**(200건)으로 7명(3.4%) 증가(건수 동일) ▲제조업 119명(115건)으로 15명(11.2%) 감소(7건 증가) ▲기타업종 128명(125건)으로 22명(20.8%) 증가(22건 증가)